

문서번호	장애인복지과 -17682
등록일자	2025. 12. 23.
결재일자	2025. 12. 23.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장애인자립지원 팀장	장애인복지과장	보건복지국장
			전결 2025. 12. 23.
정연석	정봉수	박미향	김태운
협조			

2026년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 계획

【요약】

■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대 상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지원내용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소모품 교체 및 수리
- 지원방법 : 구·군 선정 수리업체를 통한 보조기기 수리 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기초·차상위(연간 30만원 범위내), 차상위 초과(연간 20만원 범위내)
- 사 업 비 : 514백만원(시비 360백만원, 구·군비 154백만원)

■ 권역별 보장구지원센터 운영

- 수행기관 : 대구지체장애인협회(중구), 대구장애인재활협회(달서구)
- 사업내용
 - 보조기기 점검 및 수리 순회서비스, 대여,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등
 - 구·군 지정 보조기기 수리업체 연계
- 사 업 비 : 60,500천원(전액 시비)

■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 수행기관 : 대구대학교(대명캠퍼스)
- 사업내용 : 보조기기 관련 사례관리 및 교육·홍보
- 사 업 비 : 242백만원(국비 121, 시비 121)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장애인복지과]

2026년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 계획

중증장애인의 주요 이동 수단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 지원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생활 지원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5조(자립생활지원 내용)

II 추진방향

- 전동 장치류 등 고액 수리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지원 금액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
- 구·군 및 대구광역시보조기기센터와 연계, 수리지원사업 모니터링 실시

III 세부 추진계획

1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수리업체 선정일로부터 ~ 2026. 12. 31.
- 지원대상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수동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제외 대상]

- 거주시설 생활 장애인
- 판매업체의 A/S보증기간 내에 해당하여 업체 수리 가능자
-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등 타부처 급여나 지원대상자로 수리 가능자

○ 지원기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자	비 고
연 30만원 범위내 / 명	연 20만원 범위내 / 명	

※ 전동장치류 : 모터기어전체(35~80만원), 모터(17~25만원), 기어(20~30만원) 등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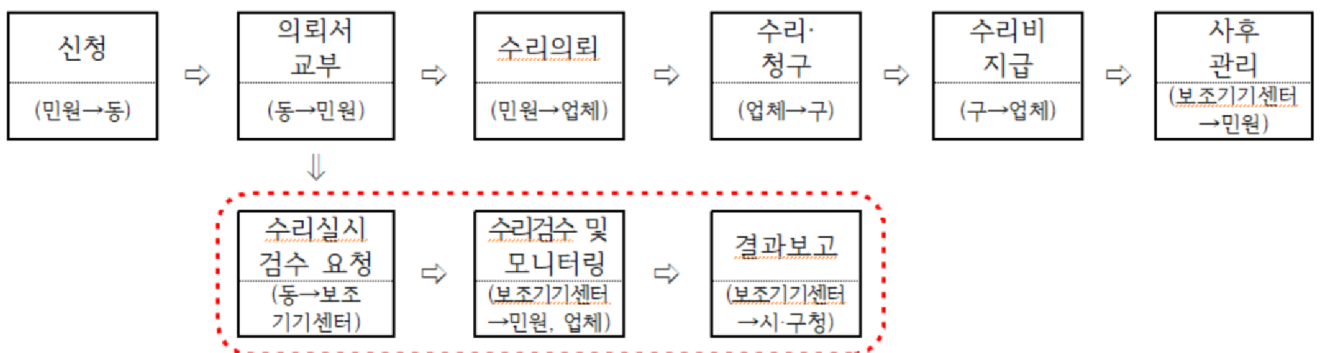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소모품 교체 및 수리
- 출고 시 장착된 부품에 대한 수리에 한정
 -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지원품목(배터리)은 지원 제외
 - ※ 기타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 제외
- 관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수리

○ 지원방법 : 구군 선정 수리업체를 통한 보조기기 수리 후 비용 지원

○ 사 업 비 : 514,286천원(시비 360,000, 구·군비 154,286) ※ 시 70%, 구·군 30%

□ 추진체계

○ 지원절차



○ 기관별 역할

수행기관	주요역할
대 구 시	사업총괄 및 보조금 교부
구 · 군	사업운영, 사업비 매칭, 수리비 지급, 수리업체 선정·관리, 부당청구 등 지도점검
대구보조기기센터	검수 및 수리과정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주 민 센 터	수리신청 접수 및 의뢰서 발급 (검수 및 모니터링 요청)
권역별 보장구지원센터	사업안내 및 홍보, 지정 수리업체 연계 등
수 리 업 체	수리 의뢰서에 의한 수리 및 수리비 청구

□ 수리업체 선정 / 1월중(구·군)

○ 신청자격

-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전동·수동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수리 경험이 있는 업체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책임기술자가 있고 긴급출동 등 현장 수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한 업체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전년도 수리실적 각 1부
- 부품별 단가표 1부
-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선정 규모 : 구·군별 자체 결정

※ 신청 장애인은 대구시 구·군에서 선정한 모든 업체 이용 가능

○ 선정방법

- 적격업체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 선정 원칙
- 전년도 선정된 수리업체는 사업평가 실시 후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재선정(기간연장) 가능
- 수리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군별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 선정 이후에도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민원 등 부적격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 가능

○ 심사기준 : 사업실적 및 인력의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

※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수행 능력 검증 실시

[심사(평가)기준 (예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100	
사 업 실 적	30	보조기기 관련 사업실적 등
인력의 전문성	30	수리 전담인력 인원 및 전문성 등
사업수행능력	20	보유 장비 및 사업장의 적절성 등
사 업 계 획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기 타	10	지역사회 기여도 및 수리지원사업 관련 특수시책 등

□ 지원절차 및 방법

- 수리신청 : 장애인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서식 1]
 -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징구(주민센터) [서식 6]
- 수리 의뢰서 교부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장애인
 - 소득수준별 지원가능 금액 확인
 - 타지역 전입 장애인의 경우 금액 등 타 지역 지원여부 확인
 - 수리의뢰서 교부 시 지원가능 금액을 구·군에 확인 후 표기
 -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등 타 부처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산재로 치료받은 병원 관할지사로 확인
 - 국가보훈처 : 대구지청(☎ 230-6156)으로 확인
 - 수리의뢰서 발급 : 2부(신청인용, 구·군 사업부서용) [서식 2]
- 접수 요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대구보조기기센터
 - 대상 : 회당 20만원 이상 또는 당해년도 2회 이상 수리요청 건
 - 접수 및 모니터링 실시 : 대구보조기기센터 → 신청장애인, 수리업체
 - 접수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 : 대구보조기기센터 → 시, 구·군
- 수리 의뢰 : 신청장애인 → 구·군 선정 수리업체(선택)
 - 수리의뢰서 유효기간 :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 수리 및 수리비 청구 : 수리업체 ↔ 주민등록지 구·군
 - 수리방법 : 신청인 가구(또는 원하는 장소)에 방문 출장 수리(3일 이내)
 - 비용청구 : 구·군으로 수리내역 통보 및 수리비 청구(익월 10일까지)
 - ※ 출고 시 장착 부품을 교체·수리한 경우에 한해 수리비 청구 원칙(출장비 미포함)

< 수리비 청구 시 구비서류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 1부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서식 4] • 세금계산서 1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1부[서식 5] • 수리의뢰서 및 수리확인서 각 1부 [서식 2], [서식 3], [서식 3-1] • 사업자등록증·계좌 사본 각 1부 |
|---|--|

- 수리비 지급 : 구·군 → 수리업체
 - 수리여부, 적정 단가 등 확인 후 수리비 확정, 월별 지급
- 사후관리 : 대구보조기기센터 → 신청 장애인
 - 소독 및 세척, 지속적인 관리, 배터리 복원 등 서비스 관리 및 만족도 조사

□ 수리업체 준수사항

- 수리만족도 조사 협조(업체 → 대구보조기기센터)
 - 대상 : 회당 20만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 2회 이상 수리요청 건
- 검수 및 모니터링 협조(대구보조기기센터 → 업체)
- 수리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 수리의뢰서 및 수리확인서 사본 비치 및 대상 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철저(구·군은 수리업체 선정 시 서약서 징구)
- 수리부품별 단가를 확인(증빙)할 수 있는 자료 비치·관리 철저
 - ※ 수리내역을 허위로 구·군에 보고하거나 수리비 산정시 부당 청구사례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지급 수리비 환수 조치 가능

② 권역별 보장구지원센터 운영

□ 수행기관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관할지역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최형석	중구 동덕로 61(대봉동)	954-0170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성군
대구장애인재활협회	정재숙	중구 남산로7길80(남산동)	255-8166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 사업내용

- 보조기기 관련 조사 및 홍보 사업
- 보조기기 순회서비스 및 보조기기 긴급 대여
-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및 보조기기의 안전 기능 강화 등 특수시책
- 구·군 지정 보조기기 수리업체 연계
 - 관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수리 지원
 - 보조기기 수리 지원
- 기타 대구광역시보조기기센터와 연계 운영 및 지원 사업 등
 - ※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사 업 비 : 60,500천원(지장협 28,500, 재활협회 32,000)

③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 운영개요

- 소 재 지 : 남구 성당로50길 33(대명동, 대구대 대명캠퍼스)
- 시설규모 : 405.61㎡(재활공학센터 1층)
- 운영인력 : 6명(비상근 소장 1, 연구실장 1, 보조공학사 3, 사례관리사 1)
- 사업내용 : 보조기기 사례관리·교육·홍보사업, 보조기기 수리 접수 및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 사 업 비 : 242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접수 및 모니터링 실시
 - 권역별보장구지원센터 : 순회서비스 일정에 따라 수리전문성 및 자체수리 가능여부 등 모니터링
 - 수리업체 : 별도 일정에 따라 서비스 질 및 합리적 공임 단가 등 모니터링
- 사후관리 및 보조기기 부품 용어 통일, 정보제공 등

IV 행정사항

- 수리업체 선정결과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 : '26. 1월중
 - 수리업체 선정결과 제출(신규 및 재선정, 부품별 단가표 포함) : 구·군
 - 권역별보장구지원센터 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제출 : 중구, 달서구
- 수리업체와 협약 체결(구·군 ↔ 수리업체) : '26. 1월중
- 구·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 사업홍보 : 구·군
- 검수요청 준수 협조 : 읍·면·동 주민센터 → 대구보조기기센터
 - 대상 : 회당 20만원 이상, 또는 당해년도 2회 이상 수리요청 건
- 권역별 센터 및 수리업체 지도·점검 실시
 - 권역별보장구지원센터 : 정기 1회, 수시
 - 보조기기 수리업체 : 정기 1회, 수시

[서식 1]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 표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				
장애유형			장애정도	심한 · 심하지 않은	
소득구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 표시)					
보조기기 유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의료용스쿠터 ☐ 기타 (모델명 : 제조연월일 :)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상기와 같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 읍면·동장 귀하					
☐ 관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위치정보 안내(민원인 수리신청시 담당자가 안내)					수수료 없음

[서식 2]

연번 : 동명-번호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서						
장 애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심한 · 심하지 않은	
소득구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장애인보조기기유형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의료용스쿠터 ※ 해당 유형에 체크						
지원금액(원)		연간 지원한도액	기 지원액		지원가능금액	
상기와 같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읍 · 면 · 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지정업체 귀하						
※ 참고사항 1. 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2. 수리비 청구 가능금액 등 문의처 : 구·군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서식 3]

장애인보조기기 수리확인서					
수리 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형		☐ 수동휠체어 (모델명 :	☐ 전동휠체어	☐ 의료용스쿠터	☐ 기타 제조연월일 :)
수리신청일자				수리완료일자	
수리내역 ¹⁾			수리비 산출내역		
			계 : _____ 원		
			_____ : _____ 원 ²⁾		
			_____ : _____ 원 ²⁾		
			_____ : _____ 원 ²⁾		
			_____ : _____ 원 ²⁾		
장 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_____)			
	장 애 명			장애정도	심한 · 심하지 않은
	소득유형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성명 _____ (서명)					
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 년 ____ 월 ____ 일					
확인자 00업체 대표 000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					
☐ 관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위치정보 안내(방문 출장 수리시 민원인에게 안내)					
첨부서류		보조기기 수리 전 · 후 사진대지 1부.			

- 수리내역은 수리한 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리부위 및 부품모델명을 기재한 후 작성 단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3-1]

보조기기 수리 전 · 후 사진	
업체명	대상자 성명
(수리전) 고장부위 사진	(수리후) 수리부위 사진
(수리전) 고장부위 사진	(수리후) 수리부위 사진
(수리전) 고장부위 사진	(수리후) 수리부위 사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청구서

수리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청구금액	금_____원(원)			

위와 같이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인)

00 구청장(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등록 관련 사항,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관련 사항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대구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수리업체 (대구시 구·군에서 선정된 수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전화번호, 장애유형/등급, 수급자·차상위여부,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수리 관련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

○○구청장(군수) 귀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수리업체 모집공고[예시]

우리구(군)에서는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보조기기를 소지한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수리업체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 00구청장(군수)

1. 신청자격

○ 우리구(군)에 소재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가능 업체

-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경험이 있는 기관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책임 기술자를 확보하고 긴급 출동 등 현장 수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한 업체

※ 수리만족도 조사 협조(업체 → 대구보조기기센터)

- 대상 : 회당 20만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 2회 이상 수리요청 건

※ 검수 및 모니터링 협조(대구보조기기센터 → 업체)

2.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 12월

※ 사업계획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사업기간 재연장 가능

3. 사업개요

○ 선정규모 : 0개소

○ 사업대상 :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지원기준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연30만원, 차상위 초과자 연20만원

○ 사업내용 : 구·군에서 선정된 수리업체를 통해 보조기기 수리 후 수리비 지급

○ 수리내용 : 전동·수동 휠체어, 의료용스쿠터의 소모품 등 교체 및 수리

4. 신청접수

저장 : 김정식 / 장애인복지과 (2026-06-18 09:11:03)

- 접수기간 : 2026. 1. . ~ 1. .
- 접 수 처 : 수리업체 소재지 관할 00구(군)청 (장애인복지 관련부서)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마감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제출서류
 - 가. 수리업체 참여신청서 1부 [구(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서식 게재]
 - 나. 사업계획서 및 2025년 수리실적 1부.
 -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은 자체 서식에 의거 자유롭게 작성 제출
 - 다. 부품별 단가표 1부
 - 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 마.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바.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5. 선정심사 및 통보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 선정기준 : 사업실적, 사업인력의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
- 결과통보 : 2026. 1월 중
 - ※ 000구(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통보

6. 준수사항

- 선정된 업체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부품별 단가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구(군)청 0000과(☎053-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사업 수리업체 참여신청서(예시)

기 관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직원현황		사업수행인원
	사업 경력	공공기관 연계	☐ 유 (사업명 : 기 간 :) ☐ 무
		자체 사업경력	
보조기기 수리 관련 자격증 사항			
사 업 계 획	주요 사업내용	○ ○	
	주요 사업실적	○ ○	
	기타사항 (지역사회 기여도 및 특주시책 수립내용 등)	○ ○ ○	
상기와 같이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사업기관 선정 후 귀 기관이 정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구청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종사자 및 보유장비 등 현황 및 수리지원사업 관련 특주시책 포함) 2. 사업실적서 1부 3. 부품별 단가표 1부 4. 기타(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책임 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1부			

[붙임 3]

수리업체 선정 심사기준[예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 점 기 준			비 고
합 계		100				
사업실적 30	보조기기 관련 사업실적	25	3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2년 미만	
			25	20	10	
	수리실적 (필요시 기간입력)	5	100건 이상	50건 이상 ~100건 미만	50건 미만	
			5	3	2	
인력의 전문성 30	수리인력 보유현황	15	4인 이상	2~3인	1인	
			15	10	5	
	수리관련 자 격 증 보유현황	15	3개 이상	2개	1개	
			15	10	5	
사업수행 능력 20	보유장비 현 황	20	전담차량 및 대여휠체어보유	전담차량 보유	전담차량 미보유	
			20	15	10	
사업계획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상	중	하	
			10	8	6	
기 타 10	지역사회 기여도	3	상	중	하	
			3	2	1	
	특수시책 수 립	7	유	무		
			7	0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업체 선정 약정서(예시)

대구광역시 00구(이하“협약당사자”이라 한다)와 ○○○(이하“협약상대자”이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하여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을 위한 수리업체를 선정·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협약당사자”와 “협약상대자”가 장애인들의 전동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준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 있어서 “선정업체”라 함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를 위해 “협약당사자”가 선정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정서의 규정은 “협약당사자”가 “협약상대자”에게 위임한 보조기기 수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약정기간)

- ① 약정기간은 수리업체 선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약정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이 약정서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대구광역시 00구·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전동·수동 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를 소지한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1.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
2. 산재보험 및 보훈대상자로 타부처 급여나 지원대상자로 수리 가능자
3. 보조기기 구입한지 1년 이내로 판매업체에 의해 보증A/S가 가능한 자

② 대구광역시 00구·군 이외의 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은 경우에도 수리를 해 주어야 하며, 지원대상 수리비용 청구는 그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으로 한다

제6조 (준수사항)

저장 : 김정식 / 장애인복지과 (2026-06-18 09:11:03)

- ① “협약상대자”는 수리 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약당사자”는 “협약상대자”에게 수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점검할 수 있고 “협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협약상대자”는 보조기기 수리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로써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전문업체로서의 정당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3. “협약당사자”는 “협약상대자”와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부당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상대자”는 수리비용을 반환하여야 하고, 지원 대상자의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다.
 4. “협약상대자”는 지원대상자(장애인 등)에게 부당하게 금품 등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5. “협약상대자”는 부품별 단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 ·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상 취득한 수리의뢰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협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중도에 양도하거나 폐업, 휴업, 업종변경 등의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정업체에 대한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수리센터”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정서에 의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협약상대자”는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협약상대자”는 지원대상자의 수리신청에 대하여 거주지 동장이 발급한 불임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의뢰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2. “협약상대자”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고 수리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수리비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협약상대자”는 지원대상자가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 출동을 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비용 지원)

저장 : 김정식 / 장애인복지과 (2026-06-18 09:11:03)

- ① “협약당사자”는 지원 대상자 1인에 대한 1년간 총 수리비 지원 범위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 30만원, 차상위 초과자 : 20만원) 내에서 수리비 전액(공임비)을 부담하고, 지원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월체어 수리의 경우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제외한다.
- ③ “협약상대자”는 “협약당사자”에게 수리비용 청구 시 출장비는 포함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에게 출장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수리비 청구 및 지급)

- ① “협약상대자”는 00구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를 수리하였을 경우 매월 수리한 실적, 보조기기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협약상대자”가 청구한 수리비를 확인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월 30일까지 “협약상대자”의 지정계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약정해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협약당사자”는 사실 확인 후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상대자”가 제6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협약상대자”가 회사정리 또는 파산을 신청하거나 “협약상대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3. “협약당사자”와 “협약상대자”가 다 같이 약정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약정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제12조(책임한계) “협약상대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13조(보칙)

저장 : 김정식 / 장애인복지과 (2026-06-18 09:11:03)

- ① 이 약정상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르며, “협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당사자”와 “협약상대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보조기기수리 관련 각종서식 각 1부

(수리의뢰서, 수리확인서, 수리내역서, 수리비 청구서)

2026. 1. .

“협약당사자” : 대구광역시 00구(군) 00길 00
대구광역시 00구청장(군수) 0 0 0(인)

“협약상대자” : 대구광역시 *****
00구 보조기기 수리업체 대표 000(인)